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532

발의연월일: 2021. 9. 13.

발 의 자: 추경호·김상훈·김선교

김용판 · 조명희 · 윤창현

김예지 · 이주환 · 성일종

백종헌 · 엄태영 · 이종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 등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 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 년간 연장함(안 제10조의2제1항).

- 나.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).
- 다.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 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2조의2제1항).
- 라.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 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2조의3제1항).
- 마.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(안 제12조의4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연구개발 관련 출연금	제10조의2(연구개발 관련 출연금
등의 과세특례) ① 내국인이 2	등의 과세특례) ①2
<u>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연구개발	024년 12월 31일
등을 목적으로 「기초연구진흥	
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	
률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	
등의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연	
구개발출연금등"이라 한다)을	
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	
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	
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	
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	
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	
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	제12조(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
에 대한 과세특례) ① 중소기	에 대한 과세특례) ①
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자체 연구·개발한	
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	
또는 기술(이하 이 조에서 "특	

허권등"이라 한다)을 2021년 1 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 한다)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.

② (생략)

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·개발한 특허 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)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④·⑤ (생 략)

제12조의2(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저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「연구 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

<u>2024년 1</u>
<u> 2월 31일</u>
② (현행과 같음)
3
<u>2024년 12월 31일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세12조의2(연구개발특구에 입주
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
법인세 등의 감면) ①

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 업장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 상사업장"이라 한다)에서 생물 산업·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 다)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 다.

- 1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
- 2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

② ~ ⑧ (생 략)

제12조의3(기술혁신형 합병에 대 제한 세액공제) ① 내국법인이 2 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

1
<u>2024년 12월 31일</u>
0
2
20241 1.2 2 21 61
<u>2024년 12월 31일</u>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12조의3(기술혁신형 합병에 대
한 세액공제) ①2
024년 12월 31일

모두 갖추어 합병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양도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양도가액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제12조의4(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법인 인(이하 이 조에서 "인수법인"이라 한다)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하 이조에서 "피인수법인"이라 한다)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
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4(기술혁신형 주식취득
에 대한 세액공제) ①
기 에 단 ~게 ㅋㅇ~게/ ①
<u>2024년 12월 31</u>
<u>2</u> 024년 12월 31

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1. ~ 5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